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3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박충권·김승수·엄태영

안철수 · 송석준 · 김선교

김정재 • 권성동 • 김성원

박준태 • 김위상 • 박성훈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 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 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
	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u>날로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
	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
	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
	시할 수 있다.